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부**

# 1 시행개요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 및 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철저히 관리하여 위기극복에 기여

## □ 시행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 □ 대상기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체 공공기관(1,020개 기관)

중앙행정기관(205)	정부부처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243)	광역자치단체(17) 및 기초자치단체(226)
시·도교육청(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공기관(3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16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14)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국·공립대학(47)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는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시행

□ 대상차량

-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150만대)

\* 렌트카 등 임대차량도 승용차인 경우 5부제(요일제) 대상에 포함

※ 민원인 차량은 제외

□ 시행방법

-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 시행

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 시행시기

- (적용기간) '26.3.25.~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적용시간) 평일(월~금) 24시간,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위반자에 대한 조치요령

-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반복적으로 위반(2~3회) 시 일정기간 출입통제 등 실질적 제재
- 상습위반자(4회 이상) 대상 엄중 문책 및 징계 조치
- 차량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적발 즉시 징계

□ 제외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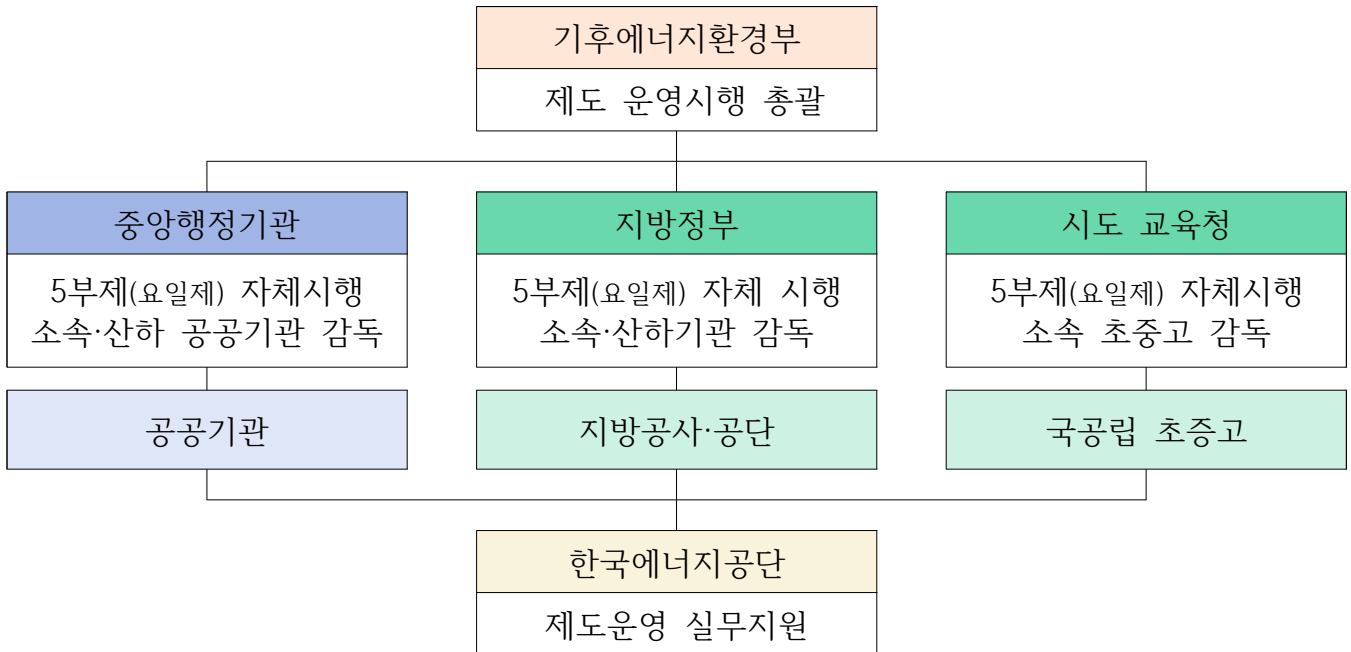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취약계층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
환경친화	전기·수소차
기타	그 외 기관장이 운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2 시행체계

- (기후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총괄, 시행지침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등 제도 운영
- (중앙행정기관) 서울·대전·과천·세종 등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청사 내 입주기관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 대상차량 출입통제 및 제외대상 등록
  -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지도·감독
  - 청사 외 건물 입주기관은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행
- (지방자치단체) 소관 청사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지도·감독
  - 관내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민간건물 또는 민간주차장에 5부제(요일제) 참여 협조요청·지원·점검 실시
- (시도 교육청) 소관 청사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및 소속·산하기관 5부제(요일제) 시행 지도·감독
  - 관내 국공립 초중고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지도·감독
-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국립대학·국립대병원) 소관 청사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및 자회사, 유관기관 등 시행 지도·감독
- (재정기획부/행정안전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전파 및 시행에 협조
  - ※ 소속 및 산하기관의 규모 또는 원거리 소재 등으로 시행주관이 어려운 경우 각 소속·산하기관별로 시행·조치
  - ※ 기관별로 운영지원과 등 승용차 5부제(요일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시행

## □ 시행체계도



※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 승용차 5부제(요일제) 추진계획 및 점검현황 등 시스템 등록(주소: <https://min24.energy.or.kr/pe>), 운영실태 검정 등 제도운영 실무지원 기관

## 3 시행요령

### ①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 (대상 승용차 파악) 임직원 차량 현황 조사 등
  - 제외차량 파악 및 제외사유 판단, 제외차량 비표 발급

<p><b>자원안보 위기 차량 5부제 적용제외 대상차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제외기간 : 2026.3.00 ~ 2026.4.00</li> <li>○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li> <li>○ 차량번호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2026.3.00</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장 (인)</p>
--

- (관리구역 지정) 관리대상 주차장, 진출입 점검위치 등 파악
  - 출입차단기 5부제(요일제) 설정 여부, 출입 관리자 유무 등
- (시행계획 제출) 관련 자료를 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 ② 5부제 시행

- (상시 안내) 일일 1회 이상 5부제(요일제) 준수 안내방송 실시
- (사내 공지) 기관 내부망·이메일을 통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공지, 안내포스터 부착,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하여 임직원 동참하도록 조치
- (출입 관리) 출입구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실시
  - 출입차단기\*로 자동 적발 및 관리자가 육안으로 번호판 확인(출입 시도 자체도 위반으로 간주)
  - \* 민간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의 경우, 건물 관리자에게 협조 요청
  - 출입차단기가 없는 경우, 출근시간(7:30~9:30)을 중심으로 근무자가 통제하고 일일 2회 이상 주차장 수시 단속
  - 민원인의 경우, 민원 목적임을 밝혔을 경우 일단 통과시킨 후, 임직원 여부 별도 확인
  - 주차장 순찰, 청사 주차장 외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집중 단속
  - 지자체는 공공기관 주변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실시
- (위반차량 조치) 위반사항 통지 후 조치요령에 따라 조치 후 월간 조치 결과를 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 ③ 이행지원

- (출퇴근 시간 조정) 기관 내 유연근무/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 분산
  - 차량 운행 휴무일 당일에 한해서는 유연근무 실시 권고
- (차량공유 활성화) 사내 게시판 운영 등 카풀(Carpool) 장려
- (민원인) 자원안보 위기상황임을 고려, 기관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 안내

#### 4 사후처리

- (위반자 조치) 매월 미이행자 명단 기관장 보고 및 징계 등 이행
- (결과보고) 출입현황과 위반사항 등 주요 이행결과를 매달 15일까지 에너지공단 시스템에 입력

- 1) 위반 및 점검 현황(일시, 소속, 건수, 조치결과 등)
- 2) 총 대상차량 대수 및 제외차량 대수
- 3) 제외 비표 발급 현황(사유별 발급 건수, 기관장 승인 사유 등)
- 4) 징계 상황, 이의신청 및 허용 상황 등.

#### 5 이행실태 점검

- (점검반) 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 (점검시기) 자원안보 위기 경보 기간 내 집중 불시 점검
- (점검내용) 추진계획 수립 여부, 차량관리 현황, 자체점검 및 조치 결과 관리 현황 등을 점검

- 지역별·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시·점검 계획 수립
- 임직원 차량 현황 파악, 임직원 참여 독려
-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따른 주차장 출입 통제 여부
-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단속 및 위반 차량에 대해 불이익 조치 등

- (사후조치) 이행실태가 미흡한 기관은 조치명령, 조치결과 보고,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규정 제22조 및 제24조 관련)

**붙임 1**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양식)**

<b>(기관명)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b>			
①기관장	○○○(성함)		
②담당자	○○○(부서명), ○○○(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③임직원 수	000명(직원수)	④대상차량수	000대(대수)
⑤제외차량	000대(대수)	취약계층	000대(대수)
		대중교통 미흡	000대(대수)
		환경친화	000대(대수)
		기타	000대(대수)
⑤주차장 수	0개소	주차면 수	00면
⑥출입차단기 5부제 입력여부		입력/미입력 여부	
⑦출입관리자 배치계획		관리자 주간/야간, 순환근무 등	
⑧청사 인근 도로 점검계획		주1회 등	
⑨안내방송 실시계획		1일 1회 등	
⑩안내포스터 게시		게시여부 및 위치	
⑪유연근무/재택근무 시행계획		시행여부 및 내역	
⑫위반자 조치계획		1회 경고 2~3회 기관장 보고 4회 이상 자체징계 등	

**붙임 2**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결과 보고(양식)**

<b>(기관명) '00.00.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결과 보고</b>				
①기관장	○○○(성함)			
②담당자	○○○(부서명), ○○○(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③임직원 수	000명(직원수)	④대상차량수 ( '00.00.00. 기준)	000대(대수)	
⑤제외차량 ( '00.00.00. 기준)	000대(대수)	취약계층	000대(대수)	
		대중교통 미흡	000대(대수)	
		환경친화	000대(대수)	
		기타	000대(대수)	
⑥주차장 수	0개소	주차면 수	00면	
⑦관리현황	기관장이 인정하는 적용제외사유	제외사유 000대		
	출입차단기 5부제 정보 입력 여부	0/X	출입관리자 배치 현황	총 0명 배치위치
	청사 인근 점검 현황	점검지역(인근 노상 주차장 등) 점검주기 월 0회		
	안내방송 실시 현황	일 0회	안내포스터 게시 내역	총 0부 배치위치
	유연근무 시행계획	(예시)운휴일 1시간 유연근무 권고		
⑧위반자 조치결과	적발 건수	총 0회	조치 현황	경고 0회 출입금지 0회 징계 0회
⑨ 적 발 세 부 내역	적발일시	적발내용	위반자소속	조치결과
	'00.00.00.	차량 미등록 청사 내 적발 청사 외 적발 등	(하부기관명)	경고/제재/징계 등



**붙임 4**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점검표**

점검일시 2026. . . ( :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점검표**

기관명				
대표자			대표전화	
소재지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	부서		직위	
	전화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항목	해당여부	비고
① 승용차 5부제 시행 추진계획 수립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② 임직원 차량 관리 현황 자료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③ 승용차 5부제 이행 점검 및 조치결과 자료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구분 (대수)	차량현황 (현황 기준일 : 월 일)			위반차량 (위반 기준일 : 월 일)			
	5부제 대상 차량(A)	5부제 제외 차량(B)	합계 (A+B)	미등록 (A)	요일제 (B)	기타 (C)	합계 (A+B+C)
임직원 차량							

위반차량 조치결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원 안보 위기 “주의단계”를 발령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도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춰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요일을 확인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의 편의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도 적극 숙지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됩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승용차 5부제(요일제) 홍보 포스터



□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 [별표 7] 승용차 요일제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라.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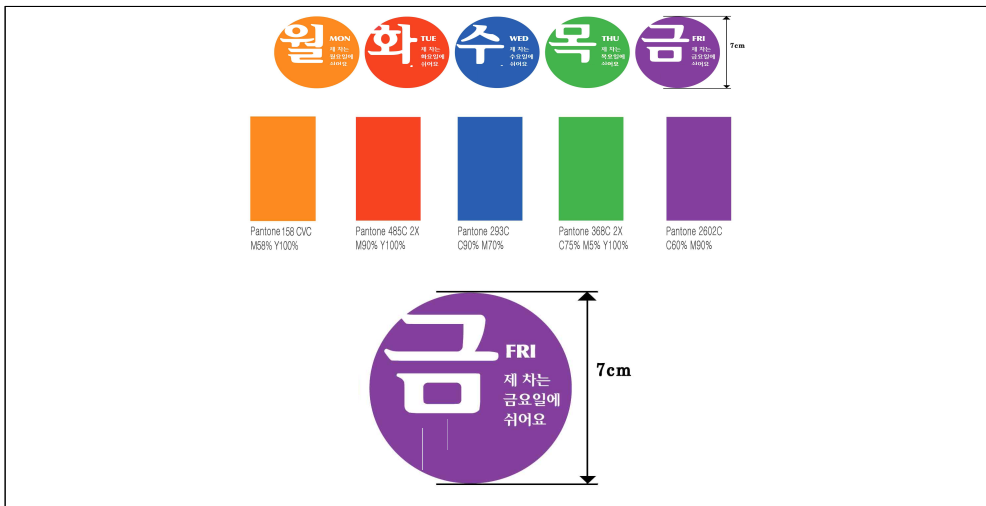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마.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cm)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신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신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나. 제외대상

###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임신부 및 유아동승차량

-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신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부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⑤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신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한다.

□ 기타 특이사항

-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p style="text-align: center;"><b>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b> (○○○기관 출입가능 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li><li>○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li><li>○ 차량번호 :</li></ul> <p style="text-align: right;">2013.12.31</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장 (인)</p>
---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p style="text-align: center;"><b>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b>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li><li>○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li><li>○ 차량번호 :</li></ul> <p style="text-align: right;">2013.12.31</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장 (인)</p>
---